

[별지 제5호서식]

본인부담금수납대장				
연 월 일	환 자 성 명	수 납 금 액 (원)		
		계	의 료 급 여	비 급 여
비 고				
1.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일에 총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				
2. 의료급여란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 전액부담항목비용을 포함합니다.				

210mm×297mm
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